

## (주)온비 제작 계약서

의뢰인(계약자, 이하 "의뢰사"라 함)과 ㈜온비(이하 "제작사"라 함)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이하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장 계약 일반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사"가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제작업체인 "제작사"에게 위탁한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계약의 성립)

본 계약조건 및 수행계획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라 함은 "제작사"가 "의뢰사"의 발주를 통해 제작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약정기간"이란 합은 본 계약의 성립 후 최종자료의 도출일로부터 별도 명시한 소정의 기간(영업일 기준)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 체결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산출물"이라 함은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의뢰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말한다.
4.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제작비 혹은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성립되며 입금 확인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제작사"는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뢰사"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서도 "제작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자료의 제공 및 보관)

1. "의뢰사"는 "제작사"에게 "웹사이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작사"가 지정한 방식과 일정에 의거하여 제공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 홈페이지 제작 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작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제작사"는 "의뢰사"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의뢰사"으로부터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기간)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의 약정기간은 최종 자료의 도출일로부터 별도 명시한 소정의 기간(영업일 기준)으로 하고, "의뢰사"와 "제작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합의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5조 (산출물의 범위)

산출물의 범위 및 상세는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계약사항 항목)

제6조 (산출물의 추가/변경)

"의뢰사"와 "제작사"는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출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전 합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의 수행방법)

1. "의뢰사"는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이미지, 각종 "의뢰사"의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정보와 내용을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용역의 수행 중 각 단계별로 "의뢰사"와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태인 경우 이전 단계의 작업에 대한 수정은 정책의 변경, 의뢰사의 변심으로 판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뢰사"는 "제작사"로부터 제작완료 혹은 홈페이지 최종 수정 완료 통보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검토판정 결과를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일 이내에 "의뢰사"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잔금, 제작 중 발생한 추가 비용 등) 검수에 합격한 날로부터 "의뢰사"는 "제작사"에게 3영업일 이내에 잔여 금액을 지급하며, 잔여 금액 지급 후 2일 이내 "제작사"는 "의뢰사"가 요청하는 도메인으로 원격지에서 당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하며, 도메인 연결 시점을 제작의 완료로 본다.

제8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의뢰사"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의뢰사"와 "제작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용역의 대가, VAT별도)

용역의 대가 및 상세는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서면, 전자계약 혹은 이메일)

제10조 (웹사이트 수정 보수 내역)

"제작사"는 "의뢰사"에게 웹사이트 제작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무상 수정, 보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하기 4가지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상 수정 및 무상 유지보수를 진행하며

- 메일/유지보수 게시판의 방법론 통한 누락 요청 접수분.
- 제작 완료일(도메인 연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내용일 것.
- 접수분외 총 작업분량이 전체 제작물의 작업내용의 10%이내일 것.
- 계약항목에 따른 "제작사"의 오류, 누락 부문일 것 ("의뢰사"의 오류, 착오, 검수미비, 정책변경, 내용변경 등은 무상범위가 아님)

제11조 (계약항목의 추가, 신설 작업)

- 웹사이트 제작 중 접수되는 수정 및 변경 요청 혹은 신규사항의 추가 요청의 경우, 계약한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인 것으로 제작사에서 확인되면 "제작사"는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추가작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작업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수행한다.
- 웹사이트 제작 완료일 이후 발생하는 추가, 변경, 신설 작업의 경우, 작업 비용을 별도 협의하여 제작에 합의한 경우 추가 혹은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웹사이트 개편 및 신설 프로그램 혹은 기능의 수정, 신설비용
  - "계약사항"에 의거하지 않은 디자인 및 메뉴 변경 및 추가 부분

제12조 (웹사이트 산출물과 저작권)

- "웹사이트"가 제작완료 및 용역비가 완불 되었을 때 저작권은 "제작사"로부터 "의뢰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산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있다.
- "의뢰사"에게 귀속된 "웹사이트"의 저작권의 권리는 본 계약 온라인 웹사이트 1개(도메인 기준)로 한다. (서브도메인 및 2차 도메인은 별도 사이트로 보며 인쇄물, 광고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면 합의의 필요.)
-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의뢰사"가 "제작사"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의뢰사"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제작사"는 저작권이 없다.
- "의뢰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사"가 이미 사전에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을 활용한다.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제작사"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
- "의뢰사"는 하나의 도메인에 한하여 사용권만을 갖는다.
- "제작사"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의뢰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사용권을 가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저작물을 재활용하거나 재배포할 수 없다. "제작사"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의뢰사"에게 독점 사용권을 준 경우를 제외하는 해당 저작물을 다른 용도에 게시 사용할 수 있다.
- "의뢰사"가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용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사"에게 있으며 "제작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의뢰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사"가 개발 또는 제공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작사"에게 있으며 "의뢰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 "제작사"는 의뢰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내용 및 콘텐츠, 정책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웹사이트 제작 후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사"가 진다. 단, "웹사이트" 제작 시 "웹사이트" 유지보수계약"이 "의뢰사"와 "제작사"와 의해 체결된 경우 해당 내용이 이 부분과 배치될 경우에는 "웹사이트 유지보수계약"의 해당 항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의무 및 보증

제13조 (신의 원칙과 비밀유지)

1. "의뢰사"와 "제작사"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웹사이트 제작에 최선을 기할 투여 할 노력을 기울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의뢰사"의 의무)

- 본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계약자 등의 내용에 허위로 등록을 해서는 안되며, 허위내용으로 "제작사"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권익을 박탈하고, 제작물의 모든 저작권을 회수한다.
- "의뢰사"는 "제작사"의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 템플릿, 제작된 웹사이트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의뢰사"는 자신이 구매했던 콘텐츠, 템플릿, 웹사이트 등의 소스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없으며 "의뢰사"의 실수로 인한 자료의 손실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뢰사"는 "제작사"에서 제공받은 사이트 및 관련 접속정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의뢰사"에게 있다.
- "의뢰사"는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의뢰사"는 "의뢰사"의 웹사이트의 제작을 위해 "제작사"에서 요청하는 제작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및 내용을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 해야한다.
- "의뢰사"는 "의뢰사"의 웹사이트 제작에 있어 "제작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상태에 있어야 하며 연락의 두절, 요청에 대한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의뢰사" 웹사이트 제작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의뢰사"의 담당자는 1인으로 하며, "제작사"에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제작사"에서 알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복수의 담당자는 불가하며, 해당 담당자 정보의 오류로 인한 호스팅 만료 고지, 도메인 만료 고지 및 기타 추후 고지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의뢰사"에 있다)

제15조 ("제작사"의 의무)

1. "제작사"는 "의뢰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제작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제작사"는 원활한 사이트제작을 위해 "의뢰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호스팅 및 도메인 유지)

- 홈페이지의 제작 완료 이후 "의뢰사"는 호스팅 및 도메인의 유지를 해야 한다.
- 호스팅 만료일 다음날부터 사이트가 차단되어 만료일로부터 1개월 동안 "의뢰사"의 웹/DB자료가 보관된다.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초과하면 복구비가 발생하여,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의뢰사"의 해당 만료 계정의 웹/DB자료는 삭제가 되어 복구가 불가능함)
- 도메인은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복구 비용이 별도 청구되며, 만료일로부터 40일이 지난 경우 연장 불가하다.

제17조 (보증의 한계)

- 제작사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정보 및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의뢰사"의 데이터 보관 부실이나 가공 시에 콘텐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그로 인한 손실에 책임지지 않는다.
- 웹사이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전체적인, 전쟁, 화재, 수해, 도난 등에 의해 "제작웹사이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웹사이트제작"의 보증 기한 내이다라도 "제작사"는 "웹사이트제작"의 환불, A/S서비스 등을 하지 않는다.
- "의뢰사"는 계약 웹사이트의 제작 중에 "의뢰사"의 사업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그 제작완료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작사"는 "의뢰사"가 제작사와 약정한 "웹사이트 제작일정" 및 "웹사이트 제작 완료 예정일"을 근거로 광고인행 등 기타 연관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즉, "제작사"는 사이트 제작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의뢰사"가 제작일정을 판단하여 집행하는 어떠한 다른 사업행위, 영업행위, 광고행위, 유권정보, 타사 호스팅의 유지 등으로 말미암은 손실에 대해서 "제작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8조 (면책항의)

- "제작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웹사이트제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 "제작사"는 사이트의 설비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 "제작사"는 기간동안 인터넷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 "제작사"는 "의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이트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작사"는 "의뢰사"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작사"는 "의뢰사"의 내부관계자 및 "의뢰사"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작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A/S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제작사"가 "의뢰사"의 웹사이트 제작에 iframe 을 이용한 타 서버 통신, 웹API, 플러그인, 웹폰트 등 타사 소스를 적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웹사이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책임이 면제된다.

제19조 (웹사이트 데이터 보관 및 이전, 포트폴리오 게시 등인)

1. "의뢰사"는 "제작사"에서 제작한 "웹사이트" 혹은 구매했던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2. 상기 1항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제작사"에 복구신청을 하는 경우 복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지하며, 복구가 가능한 경우 복구할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복구작업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홈페이지의 웹/DB 등 소스는 "제작사"가 지정한 서버에 유지해야 한다. (타사 서버 및 타사 호스팅 사용 불가)
4. "제작사"는 "의뢰사"의 웹사이트 제작 이후, "제작사"의 운영홈페이지 및 "제작사"가 제작하는 서류 및 문서 등에 "의뢰사"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이미지, URL, 의뢰사항, 제작일, 제작비, 제작역량, 제작형태)에 대해 게시할 수 있으며 "의뢰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장 배상 및 분쟁

제20조 (웹사이트 제작의 지연)

1. "의뢰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제작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및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단, "의뢰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제작을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제작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총기간은 6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 제작이 지연되어 웹사이트의 제작을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의뢰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뢰사"와 협의해야한다.

제21조 (용역의 중지)

- "제작사"는 용역의 대가 혹은 제3조에 규정한 자료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 본 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및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는 다음의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용 메일/우편 등의 수단을 통하여 해지를 통보한다.
- "의뢰사"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 해지할 수 있다.
- "제작사"는 "의뢰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작업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작사"는 "의뢰사"가 14초 8회에 해당하는 생활(연락 두절 및 요청에 대한 무응답)을 30일을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해지의 절차와 소명)

- 제 21조에 의거한 해지통보에 따라 상대방의 확인이 있는 날로부터 소명의 기간을 7영업일만 둔다.
- 제22조 1항의 소명기간 동안 해지통보를 접수받은 측이 연락 두절 및 무응답 시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23조 1항의 소명기간 동안 양측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원활한 제작협의를 하여야하며, 본 계약내용외의 항목을 통한 협의를 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 3항에 의거 인정된 계약은 서면 합의(메일/우편)를 근거로 자동으로 해지가 철회된 것으로 하며, 추가적인 합의 내용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4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의뢰사"와 "제작사"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의뢰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의뢰사"와 "제작사"의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금액은 "의뢰사"와 "제작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의뢰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된 금액과 저찰을, 각업종은 "제작사"에 귀속한다.
-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된 금액에서 디지털저찰을 구매비, 초기 세팅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뢰사"가 홈페이지에 고지한 환불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 (저작권권원 손해배상)

1. 제 12조의 저작권 관련한 위반이 있을 경우, 혹은 불법 복제하거나 판매, 임대, 공유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2. 무단으로 콘텐츠, 웹사이트 작업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콘텐츠, 웹사이트 가격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3. 무단으로 콘텐츠를 대량으로 사용, 배포한 경우 해당 콘텐츠, 웹사이트 가격에 반복사용 횟수나 매수를 곱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4장 협의 및 기타

제26조(협의 및 기타 사항)

- 본 계약의 해상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사"와 "제작사"는 원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본 계약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 본 계약 외의 발생된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협의 조정토록 하며, 불가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계약이 관계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관계법령이 우선한다.
-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계약의 내용과 "의뢰사"에 고지하는 "계약 주요내용 고지"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주요내용 고지"가 우선한다.
-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작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통합성)

본 계약서 및 "기보정보/계약사항", "계약 주요내용 고지", "제작비 정보"는 "의뢰사"와 "제작사"당사자간의 웹사이트 제작과 설치에 관한 하나의 완전한 합의서이다. 본 합의서는 "의뢰사"와 "제작사" 사이에 오간 이전의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며, 본 합의서와 상충되는 어떠한 중건의 합의 또는 합의사항도 본 합의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28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의뢰사"와 "제작사"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본 계약조건외의 변경은 "의뢰사"와 "제작사"가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 전자계약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29조 (권리의 포기)

본 계약조건외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의 기명 날인한 서면의 포기 각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가 포기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의뢰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대표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부칙

(온라인 계약의 대체) "제작사"는 본 내용을 아디디자인 혹은 "제작사"가 지정한 홈페이지 내에 고지하며, "의뢰사"에서 서비스의 대금의 유한, 혹은 전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본 내용이 동행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